KOSHA GUIDE C - 72 - 2012

역장비의 종류 및 능력, 작업위치 등에 대하여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(12) 장비의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평탄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인양장비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한 지반조건을 갖추어야 하다.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때에는 미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다.
- (13) 현장 내 장비의 이동경로 또는 인근에 고압전선로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설치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.

6. 각 공정별 안전보건 작업기준

6.1 안내벽의 설치

- (1) 설계서에서 정한 안내벽의 위치, 폭, 깊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굴착하여야 한다.
- (2) 안내벽의 상단 높이(Level)는 현장의 지반고 및 작업장 주변 펜스의 기초 등과 비교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처방안을 수립한 후 굴착하여야 한다.
- (3) 안내벽은 철근망 삽입시 설치하는 좌대 등의 하중에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.
- (4) 안내벽의 터파기 작업을 하는 때에는 굴착장비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이동경로를 확보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협착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음기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.
- (5) 굴착장비가 굴착사면에 지나치게 인접하여 작업함으로써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굴착토사는 굴착면으로부터 붕괴예상선 바깥쪽으로 적 치하여 굴착 단부에 토사에 의한 하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